

통근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I.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3년 동해어업관리단 통근버스 임차 용역
- 나. 용역기간 : 2023. 1. 1. ~ 12. 31.(운행일 : 약 249일)
- 다. 운행구간 : 부산지하철 수영역 ⇔ 동해어업관리단 청사(편도 약19km)
- 라. 운행대수 : 총 1대(45인승, 등록일 5년이내)

II.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전세버스 : 업종코드 5805)를 소지한 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1)
(단,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III. 용역 주요내용

- 가. 운행노선(편도 약 19km 구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세화빌딩 1층 연경 (수영역 5번출구 인근)	07:55	청사	18:10
벡스코	08:00	송정역	18:20
좌동 주공APT	08:10	장산역 2번 출구	18:35
장산역 5번 출구	08:15	좌동 주공APT	18:40
송정역	08:25	벡스코	18:50
청사	08:35	수영역 3번 출구	19:00

나. 운행차량

-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 규격 : 45인승 버스(등록일 5년이내)
- 조건 :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동해어업관리단」 표시판을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버스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 운행조건

- 직원 안전 등의 사유로 직영 차량에 한함
- 월 임차료에 부가세, 보험, 유류 등 제반경비 포함
- 통근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붙임 2)

IV. 제출서류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전세버스 : 업종코드 5805) 1부

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1)

다. 직영차량 운행각서(별첨 서식) 1부

V. 운행 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대차운행이 발생할 경우 대차운행 2일 이전) 차량등록증원부(등록일 5년이내), 자동차제작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결행처리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

나. 사전 통보 없이 결행하는 경우, 결행버스 위약금으로 운행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이용직원 2인으로부터 확인되면 당해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가 진다.
- 마. 운전자는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며,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 바. 운전자는 탑승자들에게 안전 유의사항 및 목적지 도착 시 하차 유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사내교육을 통한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보건에 관한 사항, 운행시간 및 시간 염수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행 전·후 운전자 건강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차량내 청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카.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승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 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 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따른다.

통근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운행)

계약상대자는 소유하고 있는 버스를 입찰공고 시의 노선표(별지1)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행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휴일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단, 2024년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규계약이 체결 될 때까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 ① 1일 운행요금 단가는 계약금액을 연간 운행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매월 운행일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운행일수의 확인은 별지3 버스운행확인서에 의한다.)
- ② 운행요금은 도로통행료, 부가세, 유류비 등 모든 제세 및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
- ③ 전항의 운행요금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월 1회 정산 지급한다.

제6조(운행방법)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량 상태(청소 및 정비 등)를 철저히 유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②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조사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차량부대시설)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버스에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동해어업관리단」 표지를 버스 전면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결행 및 위약금등)

-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발주기관도 당일 운행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결행(무단결행, 통보결행, 미승인 대차운행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제5조 제1항 평균 1일 산출액 운행요금의 3배의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③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입차량의 최초 운행 시부터 적발 시까지의 운행을 무단결행으로 처리한다.
- ④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5조의 월 운행요금 지급 금액에서 위약금의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월 운행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행 미완수 및 운행요금 불지급)

통근버스 운행 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지,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배차시간 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별지2에 의함) 발주기관은 해당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도중 천재지변이나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운행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차운행)

- 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차량번호, 자동차등록증원부(등록일 5년이내),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차 1일 전 13시 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차 운행의 경우 무자격 업체 또는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 ③ 위 각 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결행으로 처리하여 해당 대금 지급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제8조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징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발주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무등록업체 또는 무보험차 등에 대한 대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계약변경 및 해지)

-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월간 총 운행일수의 10%를 초과 결행한 때
- ② 전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해제 1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1조의 운행 대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

1. 발주기관이 통근버스 이용자수 감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1조의 운행 노선 조정, 노선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쌍방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통근버스 이용자수 증가 등 기타 사유로 제1조의 운행 차량의 차형 변경 및 증차를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와 쌍방 합의하여 변경 및 증차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운행요금은 제5조의 운행요금(계약금액)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12조(운행요금의 환수)

본 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에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3조(자동차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 조치해야 한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사고책임)

-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공무원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② 전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버스와 제10조에 의한 대차버스 및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 기관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제17조(임의규정)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한다.

<별지 1>

2023년도 동해어업관리단 통근버스 운행노선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세화빌딩 1층 연경 (수영역 5번출구 인근)	07:55	청사	18:10
벡스코	08:00	송정역	18:20
좌동 주공APT	08:10	장산역 2번 출구	18:35
장산역 5번 출구	08:15	좌동 주공APT	18:40
송정역	08:25	벡스코	18:50
청사	08:35	수영역 3번 출구	19:00

※ 공무원 근무시간이 변경될 시는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별지 2>

운 행 미 완 수 내 역 **[임차특수조건 제8조]**

1. 사고지점 :

2. 시 간 :

3. 미완수내용(구체적으로 기입) :

4. 승차공무원 확인

근무부서 :

성명:

(인)

연락처 :

〈별지 3〉

버스 운행확인서 (2023년 월)